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50
----------	-------

발의연월일 : 2018. 10. 10.
발의자 : 박광온 · 송갑석 · 권칠승
김영주 · 전현희 · 김종민
이춘석 · 윤관석 · 김현권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현금지원·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등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외국인투자가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를 “공공기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u>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p>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p>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 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 (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 각할 수 있다.</p> <p>1. ~ 7. (생 략) ② ~ ⑪ (생 략)</p>	----- ----- ----- ----- ----- ----- ----- -----. <p>1. ~ 7.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p>
--	---